



헌 법

서울법학원 헌법전임

권 순 현

【 편집자 주 】

판례와 학설은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법학과 법률문화를 이끌어 나가는 두 개의 수레바퀴와도 같아서 법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는 누구나 학설의 대립 못지 않게 판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시험합격이 최대의 목표인 대다수의 수험생들에게는 시중에 출간되어 있는 방대한 분량의 판례집은 많은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여기에 소개되는 판례는 2010년도의 중요판례만을 정리하여 놓았다. 바쁜 중에도 2010년도의 중요판례를 정리하여 주신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내년 1차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一讀을 권한다.

1. 형법 제41조 제1호 규정의 사형제도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가? (★)

☞ 형법 제41조 제1호 규정의 사형제도는 우리의 현행 헌법이 스스로 예상하고 있는 형벌의 한 종류이고, 생명권 제한에 있어서의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규정한 헌법 제10조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헌재 2010.02.25. 2008헌가23).

2. 산업재해발생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 등을 처벌하는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9조 제1호 중 제10조 제1항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가? (★)

☞ 산업재해발생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 등을 처벌하는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9조 제1호 중 제10조 제1항에 관한 부분이 최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및 포괄위임법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된다(헌재 2010.02.25. 2008헌가6).

3. 특정강력범죄의 누범규정인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중 “특정 강력범죄로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다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5조 제1항의 야간주거침입 강간미수죄를 범한 때', '제6조 제1항의 흥기휴대강간죄를 범한 때', '제9조 제1항의 야간주거침입강제추행치상죄를 범한 때', '제5조 제2항의 특수강도강간죄를 범한 때' 및 '제12조, 제5조 제2항의 특수강도강간미수죄를 범한 때'에는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는가? (★)"

☞ 위 야간주거침입강제추행치상죄, 특수강도강간죄 등의 죄질,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입법목적 및 누범요건 등을 종합하면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의하여 그 형의 하한이 징역 14년(위 야간주거침입강간미수죄의 경우에는 10년) 또는 20년까지 가중되더라도 지나치게 과중하고 가혹한 형벌을 규정하여 책임원칙에 반한다거나 형벌체계상 균형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조항이라고 볼 수 없다(헌재 2010.02.25. 2008헌가20).

4.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 제7조 제1항 본문, 제8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항,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 부칙 제2조가 헌법에 위반되는가? (★)

☞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는 근거법률인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2006. 1. 11. 법률 제7848호로 제정되고, 2007. 10. 17. 법률 제8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2항, 제7조 제1항 본문, 제8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항,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2008. 3. 28. 법률 제9051호) 부칙 제2조가 재산권, 평등권, 종교의 자유 등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아니하고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헌재 2010.02.25. 2007헌바131).

5. 교육위원 선거운동기간 전 각종 인쇄물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158조 제2항 제1호 중 "각종 인쇄물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 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되는가? (★)

☞ "각종 인쇄물"이란 명칭 및 용도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에 이용된 모든 종류의 인쇄된 유형물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고,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요청 및 선거의 공정성 확보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인쇄물을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이 선거운동

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에도 이와 동일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헌재 2010.02.25. 2008헌바10).

6. 형사항소심에 있어서 원심법원에의 환송사유로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파기하는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필요적 변호를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282조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규정하지 아니한 형사소송법 제366조은 헌법에 위반되는가? (★)

☞ 형사항소심에 있어서 원심법원에의 환송사유로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파기하는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필요적 변호를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282조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규정하지 아니한 형사소송법 제366조에 관하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헌재 2010.02.25. 2008헌바67).

7. '구 조세특례제한법'(2004. 12. 31. 법률 제7322호로 개정되고, 2005. 12. 31. 법률 제7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본문은 헌법에 위반되는가? (★)

☞ 사업계획이 발표되거나 투기 지정지역으로 지정된 후의 부동산 취득에는 투기 수요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취득시기에 관하여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는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 규정의 형식 및 법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법률조항 각 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로서 위 괄호 안에 명시된 날 전에 취득이라는 것은, 위 각 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 및 위 괄호 안에 명시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투기 지정지역으로 지정된 날 모두보다 앞서 취득한 것임을 요한다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10.02.25. 2008헌바69).

8.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농지처분의무 통지를 거쳐, 농지처분을 명령하고 불이행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구 농지법 제65조 제1항, 제4항이 헌법에 위반되는가? (★)

☞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농지처분의무 통지를 거쳐, 농지처분을 명령하고 불이행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구 농

지법(2005. 7. 21. 법률 제7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2007. 4. 11. 법률 제835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1항, 제4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헌재 2010.02.25. 2008헌바80).

9. 기부금품의 모집에 허가를 받도록 한 구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4조 제1항,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되는가? (★)

☞ 기부금품의 모집에 허가를 받도록 한 구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4조 제1항, 제2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할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같은 법 제15조 제1항 제1호는 입법재량을 넘어 과도한 제재를 과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각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헌재 2010.02.25. 2008헌바83).

10.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농지처분의무 통지를 거쳐, 농지처분을 명령하고 불이행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구 농지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제65조 제1항, 제4항, 구 농지법 제11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는가? (★)

☞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농지처분의무 통지를 거쳐, 농지처분을 명령하고 불이행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구 농지법(2005. 7. 21. 법률 제7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1호, 제65조 제1항, 제4항, 구 농지법(2007. 4. 11. 법률 제835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헌재 2010.02.25. 2008헌바98).

11.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청원경찰법(1973. 12. 31. 법률 제2666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5조 제3항이 헌법에 위반되는가? (★)

☞ 청원경찰은 기본적으로 공무원이 아니고 청원주가 임명하는 일반 근로자이므로 공무원과 청원경찰을 동일한 비교집단이라고 보기 어려워 동일한 비교집단임을 전제로 공무원과 비교하여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 있다고 볼 수 없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헌재 2010.02.25. 2008헌바160).

12.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건축허가를 필수적으로 취소하도록 규정한 건축법 제11조 제7항 제1호는, 헌법에 위반되는가? (★)

☞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건축허가를 필수적으로 취소하도록 규정한 건축법 제11조 제7항 제1호는, 건축주의 토지재산권 등을 제한함에 있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헌재 2010.02.25. 2009헌바70).

13.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면서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보훈급여금을 받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는 참전명예수당과 보훈급여금 중에서 택일하게 하여 한 가지만 지급하도록 규정한 구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단서가 국가유공자인 참전유공자를 불리하게 대우하고 있는가? (★)

☞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면서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보훈급여금을 받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는 참전명예수당과 보훈급여금 중에서 택일하게 하여 한 가지만 지급하도록 규정한 구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단서가 국가유공자인 참전유공자를 불리하게 대우하고 있다는 이유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헌재 2010.02.25. 2007헌마102).

14.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변리사등록을 한 자에게 변리사 자격을 주는 변리사법 제3조 제1항 제2호가 변리사시험을 통해 변리사가 되고자 하는 청구인들의 평등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가? (★)

☞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변리사등록을 한 자에게 변리사 자격을 주는 변리사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대하여 재판관 6(기각):3(각하)의 의견으로, 위 조항이 변리사시험을 통해 변리사가 되고자 하는 청구인들의 평등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헌재 2010.02.25. 2007헌마956).

15. 특허청 경력공무원에게 변리사시험 제1차시험 내지 제2차시험의 일부를 면제해 주는 변리사법 제4조의3 제1항 및 제2항이 변리사시험을 통해 변리사가 되고자 하는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가? (★)

☞ 특허청 경력공무원에게 변리사시험 제1차시험 내지 제2차시험의 일부를 면제해 주는 변리사법 제4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대하여는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 조항들이 변리사시험을 통해 변리사가 되고자 하는 청구인들의 평등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헌재 2010.02.25. 2007헌마956).

16. 인터넷언론사에 대하여 선거운동기간 중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실명인증의 기술적 조치를 할 의무, 위와 같은 글이 “실명인증”의 표시가 없이 게시된 경우 이를 삭제할 의무를 부과한 구 공직선거법 제82조의6 제1항, 제6항, 제7항은 헌법에 위반되는가? (★)

☞ 관계법령의 규정 내용이 구체적으로 인터넷언론사의 범위를 정하고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이를 결정·게시하며 허위정보로 인한 피해를 짧은 선거운동기간 중 치유하기 불가능하고 ‘실명확인’ 표시만이 나타나는 점을 고려하면, 위 조항들이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헌재 2010.02.25. 2008헌마324).

17. 욕로를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형법 제185조는 헌법에 위반되는가? (★)

☞ 욕로를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형법 제185조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고,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넘는 과잉입법이라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헌재 2010.03.25. 2009헌가2).

18. 선거운동에 사용하는 선전벽보에 학력을 게재함에 있어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에 대해서는 그 “수학기간”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64조 제1항, 제250조 제1항의 관련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는가? (★)

☞ 구성요건이 되는 행위를 직접 규정하지 않고 다른 법률조항을 인용하여 규정하면서 그 내용을 괄호 안에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입법기술상의 문제에 불과하고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게재하면서 수학기간을 기재하지 않으면 처벌한다”는 의미 자체는 명백하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헌재 2010.03.25. 2009헌바121).

19. 구 식품위생법 제77조 제5호 중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가? (★)

☞ 구 식품위생법 제77조 제5호의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 식품위생법 제31조 제1항은 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보건복지가족부령에서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바, 이는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식품접객영업자가 영업의 위생적 관리 및 질서유지와 국민보건을 위하여 지켜야 할 사항의 구체적 내용을 위임하고 있는 것이므로 헌법상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이나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헌재 2010.03.25. 2008헌가5).

20.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중 형법상 주거침입의 죄를 범한 강간미수범이 사람을 상해한 경우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가? (★)

☞ 강간죄의 경우에는 그 자체의 미수범도 그 불법의 정도와 피해의 정도가 기수범에 비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건 법률조항이 강간기수범과 강간미수범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잃은 자의적인 입법이라거나 평등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10.03.25. 2008헌바84).

2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02. 12. 30. 법률 제6835호로 제정된 것) 제13조 제1항, 제2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제정된 것) 제67조 제2항, 제70조 제4항,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5. 1. 14. 법률 제7335호로 개정되고, 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 구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2005. 1. 14. 법률 제7335호로 전부 개정되고, 2007. 4. 27. 법률 제8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호는 헌법에 위반되는가? (★)

☞ 공익사업법에 의한 사업인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도 공공필요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적절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경제자유구역법 제13조 제1항, 제2항이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를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로 의제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헌법 제23조 제3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헌재 2010.03.25. 2008헌바102).

22. 행정청이 잡종재산을 무단점유한 자로부터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제1항 본문 중 잡종재산에 관한 부분 및 잡종재산에 무단설치한 시설물을 행정대집행 절차에 따라 철거할 수 있도록 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3조 중 잡종재산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가? (★)

☞ 이 사건 법률조항들을 두게 된 데에는, 공유의 잡종재산의 효율적인 보존·관리라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고,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헌재 2010.03.25. 2008헌바148).

23.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이를 위반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동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운전면허정지사유에 해당하는 때” 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되는가? (★)

☞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이중처벌금지원칙에서 말하는“처벌”로 보기 힘드므로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자는 교통법규준수에 대한 책임의식과 안전의식이 결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들을 도로교통에 일정기간 관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및 공공의 안전을 지킬 수 있으며, 면허취득 결정기간이 2년의 단기간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음주운전자가 도로교통법상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에는 다른 범죄와 마찬가지로 형법 제35조의 누범조항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자와 기타 범죄자를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한다고 볼 수도 없다(헌재 2010.03.25. 2009헌바83).

24. 행정청이 공유재산을 무단점유한 자로부터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한 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제1항 본문 및 위 변상금에 대해서는 감액조정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같은 법 제81조 제5항이 헌법에 위반하는가? (★)

☞ 구 법 제81조 제1항 본문의 규정을 둔 데에는 공유의 잡종재산의 효율적인 보존·관리라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상 평등원칙에 반하지 아니하고,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헌재 2010.03.25. 2009헌바96).

25. 개발부담금의 부과종료시점을 분양계약을 체결한 날과 다른 날로 정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고, 2008. 3. 28. 법률 제904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3항 단서 제2호가 헌법에 위반되는가? (★)

☞ 이 사건 법률조항은 대통령령에 위임될 내용과 범위를 예측할 수 있으므로,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개발부담금의 부과종료시점을 납부의무자가 건축물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날과 다른 날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더라도, 합리적인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서 납부의무자의 침해를 최소화하고 있고,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제한되는 재산권의 정도가 과도하다고 볼 수 없어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하므로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헌재 2010.03.25. 2009헌바130).

26. 복식부기의무자에게 사업용계좌의 사용을 의무화하고, 사업용계좌의 개설·신고 의무를 부과한 구 소득세법 제160조의5 제1항 및 제3항 본문이 헌법에 위반되는가? (★)

☞ 위 법률조항들은 세원의 투명성 확보를 통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복식부기의무자에게 비사업용계좌와 구별되는 사업용계좌를 별도로 개설·신고하고 사용하도록 한 것이 그 목적 달성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며, 복식부기의무자에게 별도의 비용 등 특별한 부담을 지우고 있지 아니하고 이를 통하여 달성하는 공익이 복식부기의무자가 받는 불이익보다 크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헌재 2010.03.25. 2007헌마1191).

27. 헌법소원심판에 있어 반드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되는가? (★)

☞ 변호사만이 심판청구를 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률지식이 불충분한 당사자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제를 보장하고, 헌법재판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국선대리인 제도로써 변호인 선임비용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으며, 변호사에게만 대리권을 부여하는 것은 법률사무에 대한 전문성,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합리적 이유가 있어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헌재 2010.03.25. 2008헌마439).

28.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된 것) 제391조 중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항소하지 못한다'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가? (★)

☞ 입법자가 입법재량을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자의적으로 행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고, 소송비용 청구권 그 자체를 직접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소송비용에 대하여 상소심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제한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소송비용청구권을 제한하는 결과가 생기는 것인데, 위에서 본 바에 비추어 볼 때,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거나 과도하게 침해하지 아니한다(헌재 2010.03.25. 2008헌마510).

29. 후보자의 회계책임자가 3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은 경우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는 구 공직선거법 제265조 본문 중 "회계책임자"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가? (★)

☞ 헌법 제13조 제3항은 '오로지 친족이라는 사유 그 자체만으로' 불이익한 처우를 가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회계책임자가 친족이 아닌 이상, 이 사건 법률조항은 적어도 헌법 제13조 제3항의 규범적 실질내용에 위배될 수는 없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후보자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우고 있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며, 후보자에 대하여 변명·방어의 기회를 따로 부여하는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적법절차원칙에 어긋나고 재판청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헌재 2010.03.25. 2009헌마170).

30.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314조 제1항 중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는가? (★)

☞ '위력'이란 사람의 의사의 자유를 제압,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뜻하고, '업무'란 사람이 그 사회적 지위에 있어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를 의미하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법률조항이 모든 쟁의행위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단체행동권의 내재적 한계를 넘어 정당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쟁의행위의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헌법상 단체행동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며, 다른 노동관련 법규와 그 보호법익이나 죄질이 다르므로, 법정형이 지나치게 높다거나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다(헌재 2010.04.29. 2009헌바168).

31. 건설업자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법인의 경우 임원이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 포함)’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업 등록을 필요적으로 말소하도록 한 구 건설산업기본법(2005. 12. 29. 법률 제7796호로 일부 개정되고 2007. 5. 17. 법률 제847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 단서 제3호 본문 중 제13조 제1항 제4호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는가? (★)

☞ 건설업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임원이 일정 형벌 이상을 선고받아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안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선임하면 건설업 등록이 말소되지 않도록 하고 있는 등 건설업자의 직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하는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며, 이미 건설업자로 등록하여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어 건설업 등록 말소로 인한 건설업자 및 소속 근로자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것만으로 위 결정사유를 등록의 말소사유에 있어서는 달리 평가해야 된다고 볼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익균형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헌재 2010.04.29. 2008헌가8).

32. 경매를 통해 체육시설업의 필수시설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될 때, 신 소유자가 구 소유자의 사업계획승인권능을 승계하도록 규정한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항 중 “제2항” 부분 및 위 조항을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한 위 법률 부칙이 헌법에 위반되는가? (★)

☞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승인권능은 행정처분에 불과하고 사적유용성과 원칙적 처분권, 재산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헌법상 보호되는 재산권이라 할 수 없고, 입법자가 체육시설업자에 대한 다른 일반채권자의 일방적인 희생 하에 기존 체육시설업자의 회원들을 보호하도록 의도하였다고 단정짓기 곤란하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에 의해 차별이 발생하였다고 하기도 어려우며, 위 조항들로 달성하려는 공익이 그로 인해 제한되는 사익보다 크다는 점에서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헌재 2010.04.29. 2007헌바40).

33.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여 유류분을 산정하도록 규정한 민법 제1113조 제1항 중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는 부분 및 공동상속인의 증여재산은 그 증여가 이루어진 시기를 묻지 않고 모

두 유류분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하도록 하는 민법 제1118조 중 민법 제1008조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는가? (★)

☞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에 가산되는 증여재산의 평가시기를 증여재산이 피상속인 사망 전에 처분되거나 수용되었는지를 묻지 않고 모두 상속개시시로 하는 것이 현저히 자의적이어서 기본권제한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가산조항은 재산을 침해하지 아니하며, 유류분제도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와 유류분권리자를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한다고 할 수도 없다(헌재 2010.04.29. 2007헌바144).

34. 개발사업시행자에게 학교용지 조성·개발의무를 부과하고 시·도에 공급하도록 하면서도, 이러한 학교용지를 시·도가 매입하는 시기와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2007. 12. 14. 법률 제8679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되는가? (★)

☞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한 학교용지에 대한 재산권 제한이 토지소유자가 수인해야 하는 사회적 제약의 한계를 넘게 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48조가 정한 매수청구권,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 가혹한 침해를 완화하고 적절하게 보상하는 제도가 이미 마련되어 있으므로,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헌재 2010.04.29. 2008헌바70).

35. 집단적인 폭행·협박·손괴·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의 주체를 금지하는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호와 위 규정에 위반한 집회 또는 시위에 그 정을 알면서 참가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위 법률 제19조 제4항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는가? (★)

☞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그 의미가 불명확하다고 볼 수 없고,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금지되는 행위가 무엇인지를 예측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또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헌재 2010.04.29. 2008헌바118).

36. 장물 운반을 위해 차량을 사용한 산림절도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되는가? (★)

☞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제차 그 형을 가중한 것으로 이는 헌법 제13조 제1항이 금지하는 이중처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입법자가 일반 산림산물 절도죄와 달리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라는 비교적 중한 법정형을 정한 것은, 산림의 지속 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통한 국토보전,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추구하는 입법목적을 고려할 때 충분히 수긍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헌재 2010.04.29. 2008헌바170).

37. 정당한 사유 없이 보류사유 해소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구 향토예비군설치법’(1999. 1. 29. 법률 제5704호로 개정되고, 2010. 1. 25. 법률 제99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1항 중 “제6조의3 제2항”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가? (★)

☞ 이 사건 법률조항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하며, 단순한 행정상의 협조의무에 불과한 소속 기관장의 통보의무와 달리 국방의 의무에서 파생된 간접적인 병력형성의무의 일환인 보류사유 해소신고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궁극적으로 향토예비군의 인적 자원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동원 가능한 예비군 자원을 신속히 확보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과하는 것이 특별히 불합리하거나 과잉처벌이라고 볼 수 없다(헌재 2010.04.29. 2009헌바46).

38. 유족의 범위에서 형제자매를 제외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유족이 아닌 직계비속이 없을 경우 관계학교 경영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사망한 자를 위하여 유족급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같은 법 제38조 제1항 후문은 헌법에 위반되는가? (★)

☞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이 재산권 제한의 입법형성의 한계를 일탈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며, 산재보험법이 형제자매를 유족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사학연금법이 유족의 범위에 형제자매를 제외하고 있다 하여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을 다르게 취급한다고 볼 수 없어 차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헌재 2010.04.29. 2009헌바102).

39. “국채의 원금 및 이자의 소멸시효는 5년으로 한다”고 규정한 국채법(2005. 1. 27. 법률 제7345호로 개정된 것) 제17조 본문은 헌법에 위반되는가? (★)

☞ 이 사건 법률조항이 국채에 대한 소멸시효를 단기간인 5년으로 규정하여 민사 일반채권자나 회사채 채권자에 비하여 국채 채권자를 차별 취급한 것은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므로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며, 국채 채권자의 재산권을 합리적 이유 없이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어 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제한의 한계를 벗어나 헌법 제23조 제1항의 재산권보장 규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10.04.29. 2009헌바120).

40. 행정사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41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4조 제3항 중 ‘행정사의 수급상황을 조사하여 행정사 자격시험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시험실시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는가? (★)

☞ 이 사건 조항은 모범으로부터 위임받지 아니한 사항을 하위법규에서 기본권 제한 사유로 설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고, 법률상 근거 없이 기본권을 제한하여 법률유보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헌재 2010.04.29. 2007헌마910).

41. 각종 선거에서 부재자투표소에서의 투표기간을 선거일전 선거일 6일부터 2일간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148조 제1항이 부재자투표를 하려는 자의 기본권(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가? (★)

☞ 이 사건 법률조항이 부재자투표소 투표자의 평등권이나 선거권을 중대하게 제한한다고 할 수 없고, 현행 우편제도 하에서 전국의 모든 부재자투표소의 투표지가 개표사무를 담당하는 전국의 각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로 송달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여, 부재자투표소 투표를 선거일 5일 전까지 마치도록 한 것이 입법자의 합리적인 입법형성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헌재 2010.04.29. 2008헌마438).

42. 치료감호 청구권자를 검사로 한정 한 구 치료감호법(2008. 6. 13. 법률 제91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는가? (★)

☞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며, 마약류 중독자들에 대한 국가적 급부와 배려는 다른 법률조항들에 의하여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청구인의 치료감호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국민의 보건에 관한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10.04.29. 2008헌마622).

43.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 “2010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시행계획 공고” 중 2010학년도 법학적성시험의 시행일을 일요일인 2009. 8. 23.로 정하고 있는 부분이 기본권을 침해하는가? (★)

☞ 적성시험 시행공고가 시험의 시행일을 일요일로 정하고 있는 것은 대다수의 국민의 응시기회 보장 및 용이한 시험관리라는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다. 또한 시험장으로 입학된 학교들의 구체적인 학사일정에 차이가 있고, 주5일 근무제의 시행이 배제되는 사업장이 존재하며 국가시험의 경우 각각의 시험의 시행기관 및 투입비용 등이 다르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공고가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균형성 원칙에 반하여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10.04.29. 2009헌마399).

44. 청구인 1, 2는 생명윤리법상의 ‘배아’(생명윤리법 제2조 제2호 참조)에 해당하며, 그 중에서도 수정 후 14일이 경과하여 원시선이 나타나기 전의 수정란 상태인 초기배아들이다 이들도 헌법소원에서 청구인적격을 갖는가? (★)

☞ 청구인 1, 2가 수정이 된 배아라는 점에서 형성 중인 생명의 첫걸음을 떼었다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나 아직 모체에 착상되거나 원시선이 나타나지 않은 이상 현재의 자연과학적 인식 수준에서 독립된 인간과 배아 간의 개체적 연속성을 확정하기 어렵다고 봄이 일반적이라는 점, 배아의 경우 현재의 과학기술 수준에서 모태 속에서 수용될 때 비로소 독립적인 인간으로의 성장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 수정 후 착상 전의 배아가 인간으로 인식된다거나 그와 같이 취급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사회적 승인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초기배아에 대한 국가의 보호필요성이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 1, 2의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청구인 1, 2는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청구인적격이 없다(헌재 2010.05.27. 2005헌마346).

45. 생명윤리법 제16조 제1항, 제2항은 청구인 3, 4(초기배아의 생성자)의 배아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가? (★)

☞ 5년 동안의 보존기간이 임신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배아를 이용할 기회를

부여하기에 명백히 불합리한 기간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배아 수의 지나친 증가와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증가 및 부적절한 연구목적의 이용가능성을 방지하여야 할 공익적 필요성의 정도가 배아생성자의 자기결정권이 제한됨으로 인한 불이익의 정도에 비해 작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피해의 최소성에 반하거나 법익의 균형성을 잃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생명윤리법 제16조 제1항, 제2항은 청구인 3, 4의 배아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헌재 2010.05.27. 2005헌마346).

46. 채무불이행자명부나 그 부분은 누구든지 보거나 복사할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 민사집행법 제72조 제4항(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제정된 것)은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된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가? (★)

☞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는 경우는 채무이행과 관련하여 채무자의 불성실함이 인정되어 그 명예와 신용에 타격을 가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는 채무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사익보다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추구하는 채무이행의 간접강제 및 거래의 안전도모라는 공익이 더 크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익균형성의 원칙에도 반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헌재 2010.05.27. 2008헌마663).

47. 미신고 수입의 경우 법인을 범인으로 보고 필요적 몰수·추징을 부과하도록 규정한 구 관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되고, 2008. 12. 26. 법률 제92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2조 제4항 중 '제269조 제2항의 경우 제282조 제2항·제3항의 적용에 있어서 제280조의 법인을 범인으로 보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가? (★)

☞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인의 사용인 등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주의의무위반을 근거로 법인에게 그 책임을 묻고 있으므로, 책임 없는 자에 대한 처벌로서 책임주의 원칙에 반한다고는 볼 수 없고, 밀수입방조죄를 직접 저지른 사용인뿐만 아니라 법인에게도 필요적으로 몰수·추징을 부과하도록 규정한 것은 통관절서의 확립과 관세법의 이익박탈, 관세법의 징벌 및 일반예방적 효과 등을 위한 것으로서 형벌과 책임 간 비례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헌재 2010.05.27. 2009헌가28).

48. 타인에게 임대한 자기 소유의 토지 위에 폐기물이 방치된 경우 당해 토지의 소유자에게도 폐기물에 대한 적정처리를 명할 수 있도록 한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관련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가? (★)

☞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오염원인자 이외에 폐기물이 방치된 토지의 소유자에게도 보충적으로 폐기물 처리책임을 확장하여 인정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토지 관련 재산권의 사회적 기속성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제한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헌재 2010.05.27. 2007헌바53).

49.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247조의 도박개장죄에 ‘도박’이라는 개념에 ‘재물’ 뿐만 아니라 ‘재산상의 이익’을 곁고 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가? (★)

☞ 도박에 관한 죄의 보호범위 및 입법목적과 취지, 도박에 관한 죄의 본질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의 ‘도박’에는 ‘일반 재산범죄에서의 재물’로써 하는 도박뿐만 아니라 ‘기타 재산상 이익’으로써 하는 도박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 할 수 있고,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일반 수법자로서는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헌재 2010.05.27. 2007헌바100).

50. 민법 제428조 제1항(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및 제429조 제1항(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기타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포함한다)은 헌법에 위반되는가? (★)

☞ 보증계약의 당사자인 채권자와 보증인은 자신들의 의사에 따라 보증채무의 내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사적 자치의 원칙에 위반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법률조항이 달성하려는 신용거래의 안전이라는 공익은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침해받게 되는 재산권보다 크다고 보이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여 보증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10.05.27. 2008헌바61).

51. 비업무용 자산 관련비용 손금불산입 및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에 해당되는 법인 소유의 비업무용 자산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법인세법 제27조 제1호, 제28조 제1항 제4호 가목은 헌법에 위반되는가? (★)

☞ 사건 법률조항들은 비업무용 자산의 범위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으로 범위를 한정하여 하위법규인 대통령령에 위임함으로써 보다 세부적인 유형과 판정기준을 그 때 그 때의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통령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누구라도 이 사건 법률조항들로부터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헌법이 정한 위임입법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헌재 2010.05.27. 2008헌바66).

52. 사법시험의 합격자를 정원으로 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법시험법 제4조가 헌법에 위반되는가? (★)

☞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무부장관이 합격선발예정인원을 정할 때 법조와 비법조를 망라하여 구성된 사법시험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견을 듣도록 하여 전문성의 수준 및 사회적 수요를 반영한 적정 합격자 수를 도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기본권 제한에 관한 침해최소성 원칙에 부합하며, 나아가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제한되는 불이익이 위와 같은 공익에 비하여 결코 크다고 할 수 없어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헌재 2010.05.27. 2008헌바110).

53. 형제자매를 국가유공자의 유족 등의 범위에서 배제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는가? (★)

☞ 심판대상 법조항 중 제5조 제1항 상의 유족의 범위에 관한 입법자의 선택이 자의적이어서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사정이 없으므로, 심판대상 법조항 중 제5조 제1항을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심판대상 법조항 중 제5조 제1항이 기본적인 인권의 존중, 국가보상업무 및 국방의 의무에 위배되는 규정이라고도 할 수 없다(헌재 2010.05.27. 2009헌바49).

54.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보관, 중간처리하는 기준 및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는가? (★)

↳ 관련 법률 조항을 통해 건설폐기물이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등을 받은 자에 의해서만 처리될 것이라는 점, 건설폐기물의 소각 가능성이나 건설폐기물의 성상 및 종류, 재활용 가능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이 그 기준이 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포괄위임입법 금지원칙 및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헌재 2010.05.27. 2009헌바183).

55.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인 경우 또는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에는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전액 또는 반액을 각각 보전하여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 제1항 제1호 중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부분이 후보자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가? (★)

↳ 일부 후보자에 대해 선거비용 보전을 하지 않는 방법을 선택한다면 득표율을 기준으로 하여 보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고, 득표율이 10% 미만인 자는 당선가능성이 거의 없는 자이며, 지난 18대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절반에 이르는 후보자(49.4%)가 선거비용을 보전받았을 뿐만 아니라, 국가가 후보자들이 개인적으로 부담하는 선거비용 외에도 상당한 부분의 선거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점(공선법 제122조의2 제3항 참조)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설정하고 있는 기준이 자의적으로 높은 것이라고나 선거공영제의 취지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입법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여 자의적으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헌재 2010.05.27. 2008헌마491).

56. 무주택 단독세대주의 경우 40제곱미터 이하의 국민임대주택에 한하여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규정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1항 내지 제3항은 단독세대주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을 침해하는가? (★)

↳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이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이 침해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1인 가구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주거수준을 보장함에 있어 국가가 실현해야 할 객관적 내용의 최소한도의 사회보장에도 이르지 못하였다거나 헌법상 용인될 수 없는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으로 인하여 단독세대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침해되었다거나 국가에게

부과된 사회보장사무를 해태하였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10.05.27. 2009헌마 338).

57. 부산 신항만 내 북쪽 컨테이너부두 및 그 배후부지로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조성된 이 사건 계쟁지역에 대하여 경상남도 및 경상남도 진해시와 부산광역시 및 부산광역시 강서구가 서로 관할권한의 존부 및 범위를 다투는 권한쟁의 심판사건에서, 관할권한이 분할 귀속되는 기준에 대한 판단은 무엇인가? (★)

☞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경계를 결정함에 있어서 ‘중진’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 위 조항의 개정연혁에 비추어 보면 위 ‘중진’이라는 기준은 최초로 제정된 법률조항까지 순차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므로 결국 1948. 8. 15. 당시 존재하던 관할구역의 경계가 원칙적인 기준이 된다 할 것인데, 지방행정구역 중 해상경계선은 조선총독부 육지측량부가 제작한 지형도상에 표시되어 있었고, 이는 해방 이후 간행된 국가기본도에도 대부분 그대로 표시되었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간행된 국가기본도가 해상경계선 확정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헌재 2010.06.24. 2005헌라 9).

58. 증거개시에 관한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법원이 수사서류에 대한 열람·등사 허용 결정을 하였음에도 검사가 변호인의 열람·등사 신청을 거부한 행위는 헌법에 위반되는가? (★)

☞ 형사소송법 제266조의4 규정에 따른 법원의 수사서류에 대한 열람·등사 허용 결정이 있는 경우 검사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하고, 만일 검사가 이를 신속하게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증인 및 서류 등을 증거로 신청할 수 없는 불이익을 받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검사의 거부행위는 피고인의 열람·등사권을 침해하고, 나아가 피고인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까지 침해하게 되는 것이므로 검사의 이 사건 거부행위는 헌법에 위반된다(헌재 2010.06.24. 2009헌마257).

59. 수익증권을 판매한 증권회사는 수익증권에 의한 투자신탁자금의 운용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수익자가 환매청구를 한 경우 15일 이내에 그 고유재산으로 환매에 응해야할 의무를 규정한 구 증권투자신탁업법 제7조 제4항 본문, 부칙 제2조가 헌법에 위반되는가? (★)

☞ 수익증권을 판매한 증권회사는 수익증권에 의한 투자신탁자금의 운용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수익자가 환매청구를 한 경우 15일 이내에 그 고유재산으로 환매에 응해야할 의무를 규정한 구 증권투자신탁업법 제7조 제4항 본문, 부칙 제2조가 명확성의 원칙, 자기책임의 원리, 체계정당성의 원리 및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헌재 2010.06.24. 2007헌바101).

60.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산정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가 헌법에 위반되는가? (★)

☞ 이 사건 법률조항이 합리적인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고, 어떠한 지출이 토지의 취득원가에 산입되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인지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하위 법령으로 하여금 자본적 지출을 유형화하는 등의 구체적 규율을 하도록 위임할 필요성도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조세법률주의나 포괄위임입법 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헌재 2010.06.24. 2007헌바125).

61. 퇴직 군인의 상이연금 지급에 관한 규정인 군인연금법 제23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는가? (★)

☞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퇴직 이후에 폐질상태가 확정된 군인'에 대해서 상이연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 군인연금법 제23조 제1항은, 군인과 본질적인 차이가 없는 일반 공무원의 경우에는 퇴직 이후에 폐질상태가 확정된 경우에도 장해급여수급권이 인정되고 있는 것과 달리, 군인과 일반 공무원을 차별취급하고 있고, 또 폐질상태의 확정이 퇴직 이전에 이루어진 군인과 그 이후에 이루어진 군인을 차별취급하고 있는데, 군인이나 일반 공무원이 공직 수행 중 얻은 질병으로 퇴직 이후 폐질상태가 확정된 것이라면 그 질병이 퇴직 이후의 생활에 미치는 정도나 사회보장의 필요성 등의 측면에서 차이가 없을 뿐만 아니라 폐질상태가 확정되는 시기는 근무환경이나 질병의 특수성 등 우연한 사정에 의해 좌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위와 같은 차별취급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정당화되기 어려우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헌재 2010.06.24. 2008헌바128).

62. 선거운동기간 전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면서, 다만 후보자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경우에는 그 예외를 인정하는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제59조 제3호는 헌법에 위반되는가? (★)

☞ 선거 폐해와 선거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선거운동기간 제한이 불가피하고, 다만 의정활동보고가 허용되는 현역 의원과 그렇지 못한 후보자 간의 선거운동기회 불균형을 시정하고, 인터넷 활용이 확대됨에 따른 새로운 선거풍토 조성함과 동시에 선거 불공정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후보자 등에게는 예외를 허용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인터넷 사전선거운동에 의한 혼탁선거의 우려 및 사후적 선거관리의 어려움 등에 비추어 볼 때 유권자에게는 그 예외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고, 평등원칙 및 선거운동 기회균등원칙에 위배된다고도 볼 수 없다(헌재 2010.06.24. 2008헌바169).

63. 형법상 뇌물죄 적용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소속 연구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06. 3. 3. 법률 제7858호로 개정된 것) 제24조 중 '연구원'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는가? (★)

☞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전체 형벌체계상 정당성을 상실하였거나 현저히 균형을 잃은 것이라고도 할 수 없으며, 지방연구원은 공공적 성격 및 그로부터 도출되는 그 인적 구성원의 청렴성 및 직무의 불가매수성이라는 측면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이 지방연구원 소속 연구원의 직무와 관련된 수재행위를 공무원의 수뢰죄와 동일하게 처벌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합리적 근거가 있다(헌재 2010.06.24. 2009헌바43).

64. 독립유공자법상 애국지사로 등록되어 예우를 받기 위해서는 독립운동을 한 사실 외에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을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독립유공자에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호 후단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가? (★)

☞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독립유공자 선정에 있어서 입법형성권의 범위를 벗어나 최소한의 합리적 내용마저 보장하지 아니하였다거나 현저히 자의적으로 행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사회보장수급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고, 전몰군경 등 국가유공자의 경우와 달리 독립유공자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상훈 수여를 요건으로 한 것이 합리성을 결여한 자의적 차별이라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10.06.24. 2009헌바111).

65.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의사의 인력기준을 '산업의학과 전문의'로 한정한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2조 [별표 14] 제2호 가목 (1) 및 종전의 규정에 따라 특수건강진단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개정 인력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는 해당 특수건강진단기관에 재직하는 기간에 한정하여 인력기준에 적합한 자로 보도록 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부칙 제7조는 기본권을 침해하는가? (★)

☞ 산업의학과 전문의만이 특수건강진단을 위한 전문성과 자질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본 위 규칙조항이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여 산업의학과 전문의 아닌 의사들인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고, 위 부칙조항도 신뢰보호의 원칙의 위배하여 산업의학과 전문의가 아닌 의사로서 기존에 특수건강진단업무에 종사하여 온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헌재 2010.06.24. 2008헌마271).

66. 병으로서의 복무기간 및 군인 외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의 8할만 장교호봉획정경력으로 인정하고 있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7 군인 경력환산율표 부분이 기본권을 침해하는가? (★)

☞ 장교와 일반직 공무원은 그 직무의 내용이 상이하고, 그에 따라 각 복무형태, 인사운영체계 및 보수체계 역시 다르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군인 외 공무원으로 근무한 자가 장교로 임용될 경우에, 장교로 근무한 자가 다시 장교로 임용되는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고, 종전 공무원 경력의 8할만 장교의 호봉경력으로 인정하여 준다고 하여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헌재 2010.06.24. 2009헌마177).

67. 법무부장관이 사법시험 시행 일자를 토요일 또는 토요일을 포함한 기간으로 지정한 것이 제철일안식일예수재림교를 믿는 청구인들의 종교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가? (★)

☞ 법무부장관이 다수의 사법시험 응시생들의 응시장 편의를 도모하고 시험 장소의 확보, 시험관리 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토요일이나 토요일을 포함하여 사법시험 일자를 지정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헌재 2010.06.24. 2010헌마41).

68.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 및 처벌하는 의료법 및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관련조항들에 대하여, 위 조항들 중 '의료행위' 및 '한방의료행위'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는가? (★)

이 사건 조항들이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한 것은 매우 중대한 헌법적 법익인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고 국민의 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적합한 조치로서, 위와 같은 중대한 공익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다 적게 침해하는 다른 방법으로는 효율적으로 실현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조항들로 인한 기본권의 제한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헌재 2010.07.29. 2008헌가19).

69.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을 얻을 수 있게 하고, 시각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않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할 경우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한 의료법 제82조 제1항 및 제88조가 헌법에 위반되는가? (★)

이 사건 자격조항이 비시각장애인을 시각장애인에 비하여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차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비시각장애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기도 어렵고, 이 사건 처벌조항을 통하여 비안마사들의 안마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한 입법자의 결단은 수긍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입법형성자유의 범위 내에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벌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헌재 2010.07.29. 2008헌마664).

70. 형사보상의 청구는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형사보상법’ 제7조가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여 청구인의 형사보상청구권을 침해하는가? (★)

형사보상청구권의 제척기간으로서 ‘1년’이라는 기간은 지나치게 짧아 형사보상청구권의 실질적인 보장을 어렵게 하며,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라는 기산점은 형사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법률상, 사실상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모를 수 있어 형사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제척기간이 도과될 가능성이 있는바, 이는 형사보상청구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헌재 2010.07.29. 2008헌가4).

71. 사립학교 교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이었던 자가 재직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한 구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 제1항 중 구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준용 부분이 기본권을 침해하는가? (★)

↳ 기본권 제한 입법에 요구되는 최소침해성의 요건 및 법익균형성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였으며, 퇴직급여에 있어서는 국민연금법상의 사업장가입자에 비하여, 퇴직수당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비하여 각각 차별대우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차별은 사립학교 교원의 성실근무의 유도라는 입법목적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제도의 사립학교 교원의 성실한 재직에 대한 보상이라는 부수적 성격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그 차별에 합리적인 근거를 찾기 어렵다(헌재 2010.07.29. 2008헌가15).

72. 병역법 제35조 제3항 중 “제1항 제6호에 해당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보건역사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여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하여야 한다.”는 부분 및 병역법 제35조 제3항 중 “제1항 제6호에 해당하여 제2항에 따라 공중보건역사로서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여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하여야 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는가? (★)

↳ 국가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공중보건역사 편입이 취소된 사람을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함에 있어 의무복무기간에 기왕의 복무기간을 전혀 반영하지 아니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의무분야의 현역 장교로 복무하던 중 군인사법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제적되거나 신분을 상실한 사람 및 공중보건역사로서 복무하던 중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 편입이 취소된 사람 등에 비하여 훨씬 장기의 병역의무를 불공평하게 부과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헌재 2010.07.29. 2008헌가 28).

73. 퇴역연금수급권자가 정부투자기관이나 재정지원기관에 재취업하여 급여를 받으면 퇴역연금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구 군인연금법 조항들 중 제21조 제3항 제2호 및 제3호는 헌법에 위반되는가? (★)

↳ 연금지급정지의 대상이 되는 정부재정지원기관에 관하여도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지 아니하고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입법을 위임하고 있으므로, 위 조항들은 모두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헌재 2010.07.29. 2009헌가 4).

74. 민법 제818조(혼인이 제810조의 규정(배우자 있는 자는 다시 혼인하지 못한다)을 위반한 때에는 당사자 및 그 배우자, 직계존속,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또는 검사가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헌법에 위반되는가? (★)

☞ 직계비속을 제외하면서 직계존속만을 취소청구권자로 규정한 것은 가부장적·종법적인 사고에 바탕을 두고 있고, 직계비속이 상속권 등과 관련하여 증혼의 취소청구를 구할 법률적인 이해관계가 직계존속과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못지않게 크며, 그 취소청구권자의 하나로 규정된 검사에게 취소청구를 구한다고 하여도 검사로 하여금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것에 지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직계비속을 차별하고 있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헌재 2010.07.29. 2009헌가8).

75. 구 병역법 제75조 제2항 중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중 순직한 사람의 유족’에 관련된 부분이 같은 법 제26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국제협력요원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것은 헌법에 위반되는가? (★)

☞ 국제협력요원을 행정관서요원과 달리 취급하여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보상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것이 입법형성권을 벗어난 자의적인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조항은 헌법상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헌재 2010.07.29. 2009헌가13).

76. 구 도로교통법 제159조 중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50조 제1호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 또는 과료의 형을 과한다.”라는 부분 등은 헌법에 위반되는가? (★)

☞ 개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의 일정한 범죄행위 사실이 인정되면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대한 영업주의 가담여부나 종업원 등의 행위를 감독할 주의의무의 위반여부 등을 전혀 묻지 않고 곧바로 영업주인 개인을 종업원 등과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아무런 비난받을 만한 행위를 한 바 없는 자에 대해서까지 다른 사람의 범죄행위를 이유로 처벌하는 것으로서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에 반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헌재 2010.07.29. 2009헌가14).

77. 구 농산물품질관리법 제37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4조의2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과 구 농산물품질관리법 제37조 중 “법인의 대표

자가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4조의2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반하는가? (★)

☞ 전자는 책임주의 원칙에 반하므로 헌법에 위반되고, 후자는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헌재 2010.07.29. 2009헌가25).

78. 민법 제1014조에 민법 제999조 제2항 중‘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는 날부터 10년’부분을 적용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가? (★)

☞ 민법 제1014조에 민법 제999조 제2항 중‘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는 날부터 10년’부분을 적용하는 것이 상속개시 후에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으로 확정된 자의 재산권이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평등 원칙에 위배되지도 아니하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헌재 2010.07.29. 2005헌바89).

79.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5호 등 위헌소원 사건에서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광고에 관한 사전심의절차를 규정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5호 등은 헌법에 위반되는가? (★)

☞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광고를 하고자 하는 자가 사전에 건강기능식품협회의 심의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헌재 2010.07.29. 2006헌바75).

80.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항 중 관세법 제270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그 예비를 한 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부분 및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항 제4호는 모두 헌법에 위반되는가? (★)

☞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및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반한다거나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자의적인 입법 또는 과잉입법이라고 할 수도 없다(헌재 2010.07.29. 2008헌바88).

81. 농업협동조합의 임원선거에 있어서 정관이 정하는 행위 외의 선거운동을 한 자를 형사처벌 하도록 규정한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2항 제2호 중 ‘제50조 제4항’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가? (★)

☞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4항이 불명확하여 어느 범위에서 선거운동이 규

지되는지를 명확히 알 수 없고, 정관에서 허용할 수 있는 선거운동 유형에 대한 기준을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어 정관 내용 및 이에 따른 형사처벌 유무를 예측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된다(헌재 2010.07.29. 2008헌바106).

82. 특정인을 임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이나 후보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새마을금고법 제22조 제2항 등이 헌법에 위반되는가? (★)

☞ ‘누구든지’ 자기를 포함한 ‘특정인’을 임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이나 후보자에게 금품·향응 등 제공행위를 하는 것을 모두 금지함이 법 문언상 명백하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헌재 2010.07.29. 2008헌바119).

83. 신고 없이 물품을 수입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외에 그 대상 물품을 필요적으로 몰수·추징하도록 규정한 관세법 제282조 제2항 등이 헌법에 위반되는가? (★)

☞ 통관절차의 핵심적인 요소인 수출입신고의 중요성과 관세법상 몰수·추징의 징벌적 성질 및 관세법의 입법목적 등을 종합할 때 무신고 수입 물품에 대한 필요적 몰수·추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헌재 2010.07.29. 2008헌바145).

84. 자산을 양도한 자가 자신의 명의로 예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 한하여 세액공제를 인정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 제108조 제1항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되는가? (★)

☞ 이 사건 조항이 명의신탁자가 타인 명의로 한 예정신고납부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거나 당해 명의신탁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헌재 2010.07.29. 2008헌바149).

85. 구 학교급식법 제8조 제1항 중 ‘학교급식의 실시에 필요한 시설·설비에 요하는 경비는 원칙적으로 당해 학교의 설립경영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는가? (★)

☞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고,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

를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거나, 공익의 비중에 비추어 사립학교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헌재 2010.07.29. 2009헌바40).

86. 국민의 생명·건강에 직결되는 분야에 대한 민간자격의 신설·관리·운영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토록 한 자격기본법 제17조 제1항 제2호, 제39조 제1호가 헌법에 위반되는가? (★)

☞ 이 사건 법률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거나 직업선택의 자유와 일반적 행동의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아니하며,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도 않는다(헌재 2010.07.29. 2009헌바53).

87.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인 자본적 지출액 및 양도비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는 헌법에 위반되는가? (★)

☞ 이 사건 자본적 지출액 규정과 이 사건 양도비 규정이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10.07.29. 2009헌바192).

88. 구 체육시설법 제30조 제3항 중 제1항의 체육시설업의 영업양도시 그 양수인이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승계하는 부분을 준용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는가? (★)

☞ 위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체육시설업의 양수인, 경력인, 근저당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고 일반 영업양도의 경우와 비교할 때 자의적 차별이라 볼 수 없어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헌재 2010.07.29. 2009헌바197).

89. 민간사업시행자에게 집합건물법에 의한 매도청구권을 부여한 구 주택법 제18조의2 제1항 전문 제2호가 헌법에 위반되는가? (★)

☞ 대규모 주택건설이라는 공익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게 하려는 공익이 매도청구권행사로 제한을 받게 되는 사익을 능가한다 할 것이어서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고 있어 재산권을 본질적인 내용까지 침해한다거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10.07.29. 2009헌바240).

90.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중 "형법 제334조(특수강도)의 죄를 범한 자가 동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는가? (★)

☞ 성폭법 제5조 제2항이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잃은 자의적인 입법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헌재 2010.07.29. 2009헌바350).

91. 임대무기간이 경과한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할 경우 분양전환승인을 받도록 한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3항 중 제1항에 관한 부분, 임차인이 분양전환승인을 신청할 경우 임대사업자가 신청서류 작성에 협조하도록 한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6항,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대사업자의 의견을 듣지 않고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도록 한 임대주택법 제21조 제9항 본문 및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는가? (★)

☞ 임대사업자인 청구인의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하고, 임대주택법 제21조의 개정규정의 적용시점을 분양전환계획서 제출시로 삼은 임대주택법 개정법률 부칙 제3조가 청구인의 평등권, 영업의 자유, 경제활동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헌재 2010.07.29. 2008헌마581).

92. '서울특별시자치구의회의원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중 "구로구가 선거구란"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을 침해하는가? (★)

☞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선거구의 획정은 인구비례의 원칙과 의원의 지역대표성 및 인구의 도시집중으로 인한 도시와 농어촌간의 극심한 인구편차 등을 참작하여 결정하되, 해당 선거구의 의원 1인당 인구수를 그 선거구가 속한 자치구·시·군 의회의원 1인당 평균인구수와 비교하여 평균인구수로부터 상하 60%의 인구편차는 허용된다 할 것인데, 구로구가 선거구의 경우 이와 같은 허용한계를 벗어나지 않아 청구인들의 평등권 및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헌재 2010.07.29. 2010헌마208).

93.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08년 형제28767호 의료법위반 피의사건에서 피청구인인 위 검찰청 소속 검사가 2009. 1. 22.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기본권을 침해하는가? (★)

☞ 위 처분의 근거인 종업원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이유로 개인 영업주를 자동적으로 처벌하는 내용의 의료법상 양벌규정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2009헌가6)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함으로써 청구인의 행위가 더 이상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되었음에도 그 혐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처분의 효력을 지속하고 있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므로 이를 취소한다(헌재 2010.07.29. 2009헌마205).

94.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111조 제1항 제3호가 헌법에 위반되는가? (★)

☞ 무죄추정의 원칙 및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자치단체장인 청구인에게 보장된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평등권도 침해하는 법률로서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헌재 2010.09.02. 2010헌마418).

95. 구 수산업법 제98조 제2항 중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는가? (★)

☞ 개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의 일정한 범죄행위 사실이 인정되면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대한 영업주의 가담여부나 종업원 등의 행위를 감독할 주의의무의 위반여부 등을 전혀 묻지 않고 곧바로 영업주인 개인을 종업원 등과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아무런 비난받을 만한 행위를 한 바 없는 자에 대해서까지 다른 사람의 범죄행위를 이유로 처벌하는 것으로서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에 반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헌재 2010.09.02. 2009헌가11).

96. 대통령령이 규정한 어업조정에 관한 사항의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을 다시 대통령령에 위임한 구 수산업법 제53조 제2항 및 제3항이 헌법에 위반되는가? (★)

☞ 형벌법규의 위임은 특히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써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야 하고 처벌대상인 행위가 어떠한 것이 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처벌조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하였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고 어떠한 사항들을 위반하면 처벌받게 될 것인지, 또한 어느 정도로 처벌될 것인지를 예측할 수 없으므로 죄형법정주의원칙에 위반된다(헌재 2010.09.30. 2009헌바2).

97.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 중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부분 및 제257조 제1항 제1호의 '제113조 제1항' 중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가? (★)

☞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며, 기부행위 제한기간을 폐지하고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기부행위에 대하여까지 상시 제한하도록 한 것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하여 행복추구권 등 관련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헌재 2010.09.30. 2009헌바201).

98. 교육감 선거에 관하여 공직선거법의 시·도지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과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배우자의 재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를 처벌하는 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는가? (★)

☞ 교육감 선거에 공직선거법을 준용하기 위한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자의를 허용하지 않는 통상의 해석방법에 의하더라도 누구나 이 사건 준용규정에 의하여 공직선거법의 어떠한 조항이 준용될 것인지, 그에 따라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금지되고 있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이 요구하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헌재 2010.09.30. 2009헌바355).

99. 하나의 주택단지 안에 여러 동의 건물이 있는 경우의 재건축 결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3 제7항 중 “복리시설은 하나의 동으로 본다”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는가? (★)

☞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재건축에 찬성하는 구분소유자가 가지는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으므로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헌재 2010.09.30. 2008헌가3).

100.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위헌제청 사건에서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1회 계연도에 3회 이상 체납하는 경우 처벌하는 조세범처벌법 제10조는 헌법에 위반되는가? (★)

☞ 징역형을 규정하면서 벌금형도 선택형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비교적 죄질이 가볍거나 정상참작이 가능한 조세체납행위에 대하여는 선고유예까지 할 수 있으므로, 행위의 개별성에 맞추어 책임에 알맞은 형벌을 선고할 수

없도록 지나치게 과중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10.09.30. 2009헌가17).

101. 현재까지 면책조항이 추가되는 형식으로 개정된 바가 없는 양벌규정인 구 약사법 제78조 부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부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7조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는가? (★)

☞ 이는 아무런 비난받을 만한 행위를 한 바 없는 자에 대해서까지 다른 사람의 범죄행위를 이유로 처벌하는 것으로서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에 반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헌재 2010.09.30. 2009헌가23).

102. 산지관리법 제5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및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3조 제1호, 제54조 제1호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 및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4조 제2호의3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는가? (★)

☞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하여 그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법치국가의 원리 및 죄형법정주의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원칙에 반한다(헌재 2010.09.30. 2010헌가19).

103.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중 제1호의 ‘법원의 제출명령’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는가? (★)

☞ 이 사건 금융실명법 조항은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이나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헌재 2010.09.30. 2008헌바132).

104. 특정강력범죄의 누범규정인 구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중 “특정강력범죄로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다시 특정강력범죄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조 제1항의 흉기휴대간간치상죄를 범한 때에는”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되는가? (★)

☞ 책임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한 형벌로서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성을 갖추지

못하여 책임원칙에 반한다거나 형벌체계상 정당성과 균형성을 상실하여 평등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헌재 2010.09.30. 2009헌바116).

105. 경찰공무원법 제7조 제2항 제6호 중 “해임”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되는가? (★)

☞ 공무원이 해임된 경우 영구히 경찰공무원으로 다시 임용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경찰공무원직의 특수성과 중요성을 감안할 때 과잉금지원칙과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헌재 2010.09.30. 2009헌바122).

106. 동일 요양기관에서 같은 환자에게 동일성분 의약품을 중복으로 처방시 요양급여의 인정기준을 정한 보건복지가족부 고시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가? (★)

☞ 피해의 최소성에 반하지 아니하며, 의약품의 과·남용의 억제를 통한 국민건강의 증진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 건전성 확보 등의 공익이 청구인들이 입게 되는 불이익에 비하여 훨씬 크다고 할 것이어서 법익의 균형성에도 어긋나지 아니하므로, 결국 이 사건 고시가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10.09.30. 2008헌마758).

107.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가 청구인들에 대하여 한 기소유처분은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의 잘못이 있어 청구인들의 침해한 것인가? (★)

☞ 위 기소유처분은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의 잘못이 있어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는 결정을 선고한다(헌재 2010.09.30. 2008헌마481).

108. 군대 내에서 불온도서의 소지 등을 금지하고 있는 군인복무규율 제16조의2가 헌법에 위배되는가? (★)

☞ 이 사건 복무규율조항은 국군의 이념 및 사명을 해할 우려가 있는 도서로 인하여 군인들의 정신전력이 저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이라고 할 것이고, 규범의 의미내용으로부터 무엇이 금지되고 무엇이 허용되는 행위인지를 예측할 수 있으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 법령조항이라고 보기 어렵고, 군인사법 조항의 위입에 의하여 제정된 정당한 위입의 범위 내의 규율이라 할 것이므로 법

물유보원칙을 준수한 것이다(헌재 2010.10.28. 2008헌마638).

109.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청구는 가능한가 ? (★)

☞ 국가가 제정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의하여 비로소 설립된 청구인은 국회의 위 법률 개정행위에 의하여 존재 및 권한범위 등이 좌우되므로,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결국,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은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에 한정하여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청구인에게는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10.10.28. 2009헌라6).

110. 특별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구의 재산세를 특별시 및 구세로 하여 특별시와 자치구가 100분의 50씩 공동과세하도록 하는 지방세법 제6조의2와 특별시분 재산세 전액을 관할구역 안의 자치구에 교부하도록 하는 지방세법 제6조의3을 국회가 제정한 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가 ? (★)

☞ 이 사건 법률조항들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재산세 수입이 다소 감소함으로써 청구인들의 자치재정권이 다소 제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자치재정권이 유명무실하게 될 정도로 지나치게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헌재 2010.10.28. 2007헌라4).

111. 러 · 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로 활동한 행위를 친일반민족행위로 규정한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9호 중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로 활동한 행위'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가 ? (★)

☞ 위 법률조항이 비록 인격권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으나, 위 조항은 역사의 진실과 민족의 정통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우리 사회의 민주적 숙의과정 및 공론적 토대로부터 성립되었고,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로 활동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예외 없이 친일반민족행위결정을 받는 것도 아니며, 반민규명법에는 조사대상자 등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조항을 위헌이라 할 수 없다(헌재 2010.10.28. 2007헌가23).

112. 구 조세법 처벌법(1974. 12. 24. 법률 제2714호로 개정되고, 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본문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하여 제10조에 규정하는 범죄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서도 본조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는가? (★)

☞ 단순히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과하고 있는바, 이는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하여 그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법치국가의 원리 및 죄형법정주의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원칙에 반한다(헌재 2010.10.28. 2010헌가14).

113. 구 외국환거래법(1998. 9. 16. 법률 제5550호로 제정되고, 2009. 1. 30. 법률 제93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재산 또는 업무에 관하여 제28조 제1항 제2호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는가? (★)

☞ 단순히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과하고 있는바, 이는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하여 그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법치국가의 원리 및 죄형법정주의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원칙에 반한다(헌재 2010.10.28. 2010헌가55).

114. 구 관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되고, 2008. 12. 26. 법률 제92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0조 본문 중 '법인의 임원·직원 또는 사용인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70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법인도 처벌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는가? (★)

☞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은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하였던 다른 양벌규정들과 달리 면책의 가능성이 열려 있고, 법인의 사용인 등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주의의무위반을 근거로 법인에게 그 책임을 묻고 있으므로, 책임 없는 자에 대한 처벌로서 책임주의 원칙에 반한다고는 볼 수 없다(헌재 2010.10.28. 2010헌가55).

115. 청소년보호법(2004. 1. 29. 법률 제7161호로 개정된 것) 제54조 중 “개인의 대리인, 사용자 기타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0조 제2호, 제4호, 제51조 제7호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는가? (★)

☞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들은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관하여 비난할 근거가 되는 개인 영업주의 의사결정 및 행위구조, 즉 종업원 등이 저지른 행위의 결과에 대한 영업주 개인의 독자적인 책임에 관하여 전혀 규정하지 않은 채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영업주 개인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하고 있으므로 책임주의 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헌재 2010.10.28. 2010헌가23).

116.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구 지방세법(1999. 12. 28. 법률 제6060호로 개정되고, 2006. 12. 30. 법률 제8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2호 가목 중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가? (★)

☞ 이 사건 법률조항의 구체적인 의미와 내용이 명확히 정립되어 있다. 따라서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과점주주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하는지 여부라는 요소를 요건으로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므로, 과점주주들 사이에 불합리한 차별이 있어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헌재 2010.10.28. 2008헌바42).

117.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구 국세기본법(1998. 12. 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되고, 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 중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가? (★)

☞ 이 사건 법률조항의 구체적인 의미와 내용이 명확히 정립되어 있다. 따라서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과점주주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대하여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하는지 여부라는 요소를 요건으로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므로, 과점주주들 사이에 불합리한 차

별이 있어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헌재 2010.10.28. 2008헌바49).

118. 건설공사를 위하여 문화재발굴허가를 받아 매장문화재를 발굴하는 경우에 그 발굴비용을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한 구 문화재보호법 제44조 제4항 제2문, 제3문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되는가? (★)

☞ 유실물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토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최소침해성 원칙, 법익균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나아가 포괄위임입법 금지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헌재 2010.10.28. 2008헌바74).

119.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을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도록 하는 평가원칙을 규정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고, 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전문 중 증여세에 관한 부분,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되는가? (★)

☞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증여재산을 원칙적으로 시가에 의한 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과세가액을 산정함으로써 납세의무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공익에 비하여 크다거나, 자의적이거나 임의적인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헌재 2010.10.28. 2008헌바140).

120.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등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화해사무를 취급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한 구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는 헌법에 위반되는가? (★)

☞ 공익실현을 위한 기본권제한의 수단이 적정하며, 단지 금품 등 이익을 얻을 목적의 법률사무취급만을 금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10.10.28. 2009헌바4).

121. 한약사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한약학과를 졸업한 자에 한정하고 있는 약사법 제4조 제2항 및 한약관련과목 20과목 95학점을 이수하기만 하면 한약사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인정하던 종전규정을 1996학년도에 입학한 자까지만 적용하고 있

는 약사법 부칙 제13조 제3호가 헌법에 위반되는가? (★)

☞ 한약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한약학과 졸업생들에게만 인정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헌재 2010.10.28. 2009헌바23).

122. 소득세법상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자에게 양도소득금액을 정함에 있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60%의 단일 세율을 적용하도록 한 것은 헌법에 위반되는가? (★)

☞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본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3,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2003. 12. 30. 법률 제7006호) 부칙 제16조에 의하면 법 시행 일로부터 1년의 유예기간이 지난 후에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주택 양도소득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과세표준에 60%의 단일세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과잉금지원칙,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여 재산권,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헌재 2010.10.28. 2009헌바67).

123. 신병훈련소에서의 전화 사용을 통제하는 육군 신병교육 지침서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가? (★)

☞ 이 사건 지침에서 신병교육훈련기간 동안 전화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는 규율이 청구인을 포함한 신병교육훈련생들의 기본권을 필요한 정도를 넘어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헌재 2010.10.28. 2007헌마890).

124.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의 검사 등에 관한 기준'제3조 제5호 및 제4조 제1항이 요양기관으로 하여금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소프트웨어 기능이 포함된 요양급여비용 청구소프트웨어를 사용하도록 하고 의사들로 하여금 금기약품 처방시 그 사유를 실시간으로 심사평가원에 전송하도록 규정한 것은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가? (★)

☞ 이 사건 고시조항들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헌재 2010.10.28. 2008헌마408).

125. 형사보상의 청구에 대하여 한 보상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형사보상법 제19조 제1항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가? (★)

↳ 불복을 허용하더라도 즉시항고는 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고 사건수도 과다하지 아니한데다 그 재판내용도 비교적 단순하므로, 불복을 허용한다고 하여 상급심에 과도한 부담을 줄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불복금지조항은 형사보상청구권 및 재판청구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헌재 2010.10.28. 2008헌마514).

126. 새마을금고법 제21조 제2항, 제1항 제10호 중 새마을금고법 제85조 제4항, 제22조 제2항과 관련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가 ? (★)

↳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헌재 2010.10.28. 2008헌마612).

127. 구 ‘참전유공자에우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항 단서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가 ? (★)

↳ 본질적으로 다른 집단인 전상군인(상이를 입은 참전유공자)과 비전상군인(상이를 입지 아니한 참전유공자)을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에 있어 같게 취급함으로써 전상군인인 청구인들을 차별취급하고 있지만, 그러한 차별을 정당화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법률조항의 내용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헌재 2010.10.28. 2009헌마272).

128. 적법하게 청구된 동행계호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가 ? (★)

↳ 적법하게 청구된 동행계호행위도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지는 않는다(헌재 2010.10.28. 2009헌마438).

129. 교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직에서 당연퇴직하는 것으로 규정한 사립학교법 제57조 중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4호 부분이 헌법상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가 ? (★)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사립학교 교원의 당연퇴직 사유로 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배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헌재2010.10.28. 2009헌마442).

130. 국가경찰공무원 중 경사 계급까지 재산등록의무자로 규정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가? (★)

☞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기본권 제한의 법익 균형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어 청구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고, 대민접촉이 거의 전무한 교육공무원이나 군인 등과 달리 경찰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경사 계급까지 등록의무를 부과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10.10.28. 2009헌마544).

131. 외교기관 인근의 옥외집회나 시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도 외교기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구체적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옥외집회나 시위를 허용하고 있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호 중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는가? (★)

☞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외교기관의 기능과 안전의 보호라는 국가적 이익이며,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익충돌의 위험성이 없는 경우에는 외교기관 인근에서의 집회나 시위도 허용함으로써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상충하는 법익 간의 조화를 이루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헌재 2010.10.28. 2010헌마111).